

인천문화재단 정책토론회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의 운영 방향

2021년 4월 8일(목) 15:00 ~ 17:00



● 주최\_  인천광역시

● 주관\_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 2021 인천문화재단 정책토론회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의 운영 방향

### ■ 일정

시간		소요 (분)	순서	내 용
부터	까지			
15:00			진행	이 윤(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15:05	15:30	25	브리핑	김락기(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15:30	16:20	50	토론	이찬영(인천민예총 부이사장) 최영화(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래(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하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박찬훈(인천광역시 문화관광 국장)
16:20	16:40	20	질의응답	
16:40	17:00	20	종합토론	



# 인천문화재단 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

김 락 기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 1

## 인천문화재단 기금 현황

### 1. 인천문화재단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명 칭 :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 (약칭 “기금”) (제7조)
  - 설치목적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충당 (제7조제1항)
  - 관리구분 :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 별도 계좌로 운용(제8조)
  - 조성목표 및 시한 : 2020년까지 1,000억원 (제9조제2항)
  - 조 성 액 : 53,890백만원
  - 조성재원 : 출연금, 기부금, 재단 사업 수익금 등 (제9조제1항)
- \* 시 출연금 50,573(93.9%), 자체적립 1,191(2.2%), 기부금 2,125(3.9%)

구분 재원 연도	기본적립금		문화예술육성기금(기부금)				당해연도 적립금액 합계 (단위:원)	누적금액
	인천광역시 출연금	이익잉여금 처분액 (자체적립)	신세계백화 점	한국씨티은행	농협중앙회 (인천지점)	기타		
2004	39,573,280,769	-	-	-	-	-	39,573,280,769	39,573,280,769
2005	1,000,000,000	49,848,000	118,516,721	500,000,000	-	-	1,668,364,721	41,241,645,490
2006	3,000,000,000	-	124,442,557	500,000,000	-	-	3,624,442,557	44,866,088,047
2007	1,000,000,000	-	124,442,557	-	-	-	1,124,442,557	45,990,530,604
2008	2,000,000,000	41,728,562	124,442,557	-	50,000,000	-	2,216,171,119	48,206,701,723
2009	-	-	124,442,557	-	-	-	124,442,557	48,331,144,280
2010	2,000,000,000	-	126,050,589	-	50,000,000	3,000,000	2,179,050,589	50,510,194,869
2011	100,000,000	-	79,411,870	-	20,000,000	-	199,411,870	50,709,606,739
2012	100,000,000	358,010,797	83,382,464	-	10,000,000	-	551,393,261	51,261,000,000
2013	100,000,000	92,679,000	87,551,588	-	-	-	280,230,588	51,541,230,588
2014	-	-	-	-	-	-	0	51,541,230,588
2015	-	8,769,412	-	-	-	-	8,769,412	51,550,000,000
2016	-	-	-	-	-	-	0	51,550,000,000
2017	1,200,000,000	10,000,000	-	-	-	-	1,210,000,000	52,760,000,000
2018	500,000,000	230,000,000	-	-	-	-	730,000,000	53,490,000,000
2019	-	300,000,000	-	-	-	-	300,000,000	53,790,000,000
2020	-	100,000,000	-	-	-	-	100,000,000	53,890,000,000
합 계	50,573,280,769	1,191,035,771	992,683,460	1,000,000,000	130,000,000	3,000,000	53,890,000,000	
	기본적립금 51,764,316,540원		문화예술육성기금 2,125,683,460원				53,890,000,000	

## 2.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용현황

- 기금총액 : 53,890백만원
- 운용근거 :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 관리규정
- 운용방식 : 위탁운용 (운용기간 : 2년, 2016년부터 위탁방식 시행)
- 운용기관 : 삼성증권 여의도법인지점 / 신한은행 중구청지점 (입찰 선정)
- 자산배분 : 정기예금 30.9%, 원금보장형상품 30.9%, 채권 38.2%

운용기관	운용상품	예치금액(천원)	편성 비중(%)
삼성증권	채 권 형	20,599,000	38.2
	정기예금	16,645,500	30.9
신한은행	원금보장형상품(ELD/매입약정)	16,645,500	30.9
	소 계	33,291,000	61.8
계		53,890,000	100.0

## 3. 적립기금 운용수입 실적추이 (최근 10년)

- 사용용도 : 재단 운영 및 사업비로 사용
- 수입내역

※ 2020. 12월말 현재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금액(A)	50,710	51,261	51,541	51,541	51,550
운용 수입					
이자수입(B)	2,237	2,196	1,605	1,395	856
환 급 금(C)	348	364	357	220	227
운용수수료(D)	-	-	-	-	-
운용수입 금액 (E=B+C-D)	2,585	2,560	1,962	1,615	1,083
수익률 (E/A*100)	5.1	5.0	3.8	3.1	2.1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누적금액(A)	51,550	52,760	53,490	53,790	53,890
운용 수입					
이자수입(B)	1,093	1,093	1,079	1,313	857
환 급 금(C)	138	186	185	252	185
운용수수료(D)	-	121	109	119	27
운용수입 금액 (E=B+C-D)	1,231	1,158	1,155	1,446	1,015
수익률 (E/A*100)	2.4	2.2	2.2	2.7	1.9

※ 이자수입 : 예치상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

※ 환 급 금 : 전년도 이자수입에서 법인세 납부분을 당해년도에 환급받는 금액

※ 운용수수료 : 위탁운용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 2

## 인천문화재단 기금 관련 논의 경과

- ▶ 2020년까지 1,000억원의 적립기금 조성목표가 미달성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
- ▶ 조례제정 당시와 현시점과의 차이점, 타시도 사례 등을 살펴보고, 인천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기금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

### 1. 주요 논의내용 : 기본재산, 자원, 조성방법, 조성목표, 조성시한, 용도

가. 기본재산의 정의 : 기금과 현물로 구분 (제7조제2항)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나. 적립기금의 자원 : 적립기금의 자원 명시 (제9조제1항)

1. 인천시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다. 적립기금 조성방법 : 인천시 일반회계에서 출연 (제9조제2항)

라. 조성목표 및 조성시한 : 1,000억원을 2020년까지 조성 (제9조제2항)

마. 기금의 용도 : 운용기금 및 적립기금의 용도 (제10조제1항, 제2항)

- 운용기금 : 재단 운영비, 문화예술 사업·활동 및 시설 지원
- 적립기금 :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기본재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부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3. 기부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2. 전문가 간담회 개최

○ (1차) 20.11. 3. / 8명(시1, 의회2, 재단1, 예술인·전문가4)

연번	성명	직책
1	박찬훈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
2	김성준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3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4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경영본부장
5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인천광역시 문화특보
6	이찬영	인천문화재단 이사,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대표
7	장영철	인천문화재단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선임직), 중부대 교수
8	김재업	인천예총 수석부회장

○ (2차) 20.11.10. / 5명(시1, 재단1, 예술인·전문가3)

연번	성명	직책
1	박찬훈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장
2	공규현	인천문화재단 전략기획팀장
3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 인천광역시 문화특보
4	이찬영	인천문화재단 이사,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대표
5	김재업	인천예총 수석부회장

## 3. 예술인 간담회 개최

○ 21. 1.25. / 예술인 7명

연번	성명	직책	전문분야
1	서광일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대표	전통
2	양진채	화도진문화원 사무국장	문학
3	이승묵	인천콘서트챔버 대표	음악
4	이재상	극단 미르 레퍼토리 대표	연극
5	이찬영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대표	풍물
6	장한섬	플레이캠퍼스 대표	연극/기획
7	채은영	임시공간대표 / 독립큐레이터	전시/기획

---

##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요약

---

가. '기금 1,000억원 조성' 을 '기본재산 1,000억원 조성' 으로 변경

(현재) 적립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도록 명시

(개정) 기본재산 1,000억원을 조성하도록 변경

나. 현금 출연과 더불어 현물 출연이 조성목표금액에 포함되도록 변경

(현재) 기금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현금만 출연(현금 출연)

(개정) 재산 출연이 조성목표에 포함되도록 변경(현금 및 재산 출연)

다. '2020년까지 조성' → '2030년' 으로 변경 또는 '연한 삭제'

(현재) 적립기금 1,000억원을 2020년까지 조성

(개정) 기본재산 1,000억원 조성연한을 2030년까지 변경 또는 연한 삭제  
(2가지 안 중에서 검토)

라. 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

(현재) 기본재산 처분 조항 미비, 기금 적립금액 사용 불가

(개정)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 가능하도록 변경

(인천광역시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 부여)

마. 운용기금의 용도 표현 삭제

(현재) 기금을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

(개정) 운용기금 / 적립기금을 기금으로 통합 (육성기금으로 통일)

바. 기금의 운용방향과 용도를 명시

(현재) 기금 적립금액 사용 불가

(개정) (운용방향) 기금의 평가금액이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변경

(용도) 재단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처분 가능하도록 변경

---

---

## 예술인 간담회 논의 결과 요약

---

### 가. 기본재산으로의 용어 변경

- 재산의 범위를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견 없음

### 나. 적립기금 조성 시한

- 적립금액 목표와 조성 시한을 두어 선언적, 상징적 의미 유지
- 재단 운영의 로드맵을 위해서라도 조성 시한은 필요함

### 다. 현물 출연

- 현물의 가치에 대한 과다계산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험
- 운영비 담보를 전제한다면 현물출자 고려 가능

### 라. 적립기금 용도

- 적립기금을 사용하여 재산을 증식할 경우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설문조사시 코로나19를 예시로 명시하는 것은 현 상황상 기금의 사용으로 선택이 치우칠 수 있으므로 세부 사례 명시에 신중할 필요 있음

### 마. 설문조사 관련

- 재단은 소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포커스 그룹이 예술인 / 시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표본이 제한적임
- 최소 500인 이상의 대상을 설정하여 통계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함

### 바. 기타의견

#### ○ 재단의 재정 독립성 확보

- 적립기금 조성 및 재단의 재정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연한에 맞추어 기금적립을 해야 함. 인천시, 시의회 의지 문제임

#### ○ 재단의 노력

-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에서 관심을 갖도록 재단의 노력도 필요함

#### ○ 예술 현장에 대한 시의 관심과 정책 필요

- 인천시 차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예술인들의 현황을 개선하려는 정책간담회 필요

# 참고1

## 광역문화재단 기금 조례 비교

2021. 3월말 기준 (단위:백만원)

시도명	기금명	목표액 설정	사용 가능여부	적립액	구성재원	기타사항
서울	별도기금없음 (기본재산)	출연한도액 100,000	○	현금 15,149 부동산 62,109	시 출연금(64.5%) 기부 및 후원금 등 (35.5%)	재단은 기본재산 5%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 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 분하는 경우 시의회 소 관 상임위 보고
부산	별도기금없음 (기본재산)	-	○	현금 34,780	시 출연금(98.76%) 후원금 등(1.24%)	-
인천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	100,000 (2020년까지)	×	53,890	시 출연금(96.1%) 기타(3.9%)	
대구	대구문화재단 기금	-	×	21,822	시·출연금(98.52%) 이자수입 등(1.48%)	
광주	광주문화재단 기금	50,000	×	10,523	시 출연금(87.4%),기부금(7.6%) 국세환급금(2%), 순세계양여금(2.7%)	
대전	대전문화재단 기금	50,000	×	14,875	시 출연금(74.6%) 이자수입 등(25.4%)	
울산	울산문화재단 기금	-	×	2,799	시 출연금(80%), 예금이자(4%), 일반회계 잉여금 등(1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기금	-	×	15,000	시 출연금(100%)	
경기	별도기금없음 (기본재산)	-	○	현금 103,112 부동산 16,896	도 출연금(86.4%), 기본재산 적립(5.9%), 문진기금(5.3%),기부금(2.4%) 등	기본재산 사용시 도의회 해당 상임위 보고
강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50,000	×	21,751	중앙기금(4.5%),출연금(60.5%), 시군비(2.9%),기부금(0.4%), 이자수입 등(31.6%)	
충북	충북문화재단 기금	-	규정 없음	29,530	중앙기금(18.12%), 도 출연금 (34.62%),시군 출연금(36.51%), 이자수입 등(10.75%)	
충남	충남문화재단 기금	-	×	6,933	도 출연금(99%) 이자수입(1%)	
전북	전라북도문화 관광재단기금	-	×	30,608	도 출연금(99%) 이자수입 등(1%)	
전남	문화예술육성 기금	20,000	규정 없음	14,784	도 기금(76%), 도 출연금(14%) 이자수입 등(10%)	
경북	경북문화예술 진흥기금	-	규정 없음	138.6	기타(100%)	
경남	경남문화예술 진흥기금	100,000 (2025년까지)	규정 없음	14,613	도 출연금(68.43%) 이자수입 등(31.58%)	
제주	제주문화예술 재단육성기금	30,000 (2020년까지)	규정 없음	17,02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94.5%) 재단 및 민간 (5.5%)	도지사는 재단의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에 대한 취득 또는 처분을 승인할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 보고

▶ 기금 미운영 (기본재산으로 관리) : 서울, 부산, 경기

## 참고2

# 인천문화재단 일반회계 재원현황 (기금제외)

(단위:천원)

연도	지원금					자체수입 (기금수익 등)	기부금	합 계
	소 계	출연금	국비	시비	군구비			
2005년	1,880,378	1,300,000	304,378	276,000		1,338,527		3,218,905
2006년	2,345,000	1,600,000	460,000	285,000		2,234,138		4,579,138
2007년	3,268,000	2,100,000	409,000	759,000		3,046,100	500,000	6,814,100
2008년	7,459,500	3,300,000	850,500	3,309,000		4,372,959	140,000	11,972,459
2009년	9,773,857	3,700,000	925,700	5,148,157		6,128,248	370,000	16,272,105
2010년	12,646,353	4,200,000	1,107,863	7,338,490		4,648,973		17,295,326
2011년	11,717,800	5,450,000	1,739,863	4,527,937		6,806,018		18,523,818
2012년	9,612,613	2,701,000	3,756,076	3,155,537		7,894,912	24,000	17,531,525
2013년	11,548,085	1,925,000	4,769,948	4,853,137		6,583,562	105,000	18,236,647
2014년	13,122,938	1,487,700	6,103,701	5,150,537	381,000	3,207,206	105,929	16,436,073
2015년	14,778,778	720,000	7,425,591	6,633,187		3,051,484	191,845	18,022,107
2016년	15,318,188	1,250,000	8,292,688	5,627,000	148,500	4,907,907	188,872	20,414,967
2017년	20,435,200	6,223,000	6,687,066	7,322,134	203,000	1,794,101	297,859	22,527,160
2018년	24,194,622	6,133,000	8,084,624	9,808,262	168,736	3,405,101	275,083	27,874,806
2019년	24,455,974	5,961,000	8,015,013	10,289,961	190,000	4,599,641	322,768	29,378,383
2020년	29,537,044	7,931,000	8,592,879	12,798,165	215,000	6,549,498	320,956	36,407,498
<b>합 계</b>	<b>212,094,330</b>	<b>55,981,700</b>	<b>67,524,890</b>	<b>87,281,504</b>	<b>1,306,236</b>	<b>70,568,375</b>	<b>2,842,312</b>	<b>285,505,017</b>

**서울특별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 8. 1., 2016. 1. 7., 2019. 12. 31.〉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시의 출연금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한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

④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경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경기도 및 경기도내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15. 5. 1.〉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 5. 1.〉

② 기본재산의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천문화재단 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 관련 토론회

- 토론회 : 이찬영(인천민예총 부이사장)  
최영화(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병래(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김하운(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 인천문화재단 기금 적립 및 운영에 대한의견

이 찬 영 (인천민예총 부이사장)

### ■ 상황

- 인천문화재단 기금
  - 인천시출연금, 기부금, 재단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 인천문화재단 운용기금, 적립기금

### ■ 인천문화재단 기금 ‘1,000억’ 조성관련의견

- 2004년 인천문화재단은 인천지역 시민사회, 문화예술단체 등의 요구로 출범한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문화재단이 거버넌스 형태의 조직으로 만들어져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운영과 사업에 있어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초기 재단의 기금을 1,000억 적립하여 그 이자로 인천문화재단의 운영하고자 했던 취지가 운영에서 독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재단기금 적립의 경제적 실효성은 사라졌지만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의 취지에 비춰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 어떤 형태로든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천문화재단 기금적립은 2010년까지 인천시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여러 상황으로 조성이 안 되어, 당시 조례를 고쳐서 2020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허나 실제 2020년 조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그 절차와 내용 등 상황은 이해하지만 인천시 차원의 적절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물론 그동안 인천시가 매년 30억~60억 정도의 비용을 재단에 지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 예산을 세워 인천문화재단이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충분히 칭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예산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인천시의 확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인천시 기금 관련한 의견

1. 기금 조성에 대한 시한 : 인천시 기본 재산 1,000억 원에 대해서는 시한(약 10년 정도)을 두

고 조례를 개정해서 조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기금 관련 사용 및 처분 등

- 기금이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분리된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 적립기금 사용불가 부분도 문화예술관련 공공목적(문화재단의 사업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인천문화재단 기금운영위, 이사회, 인천시의회,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함께 합의 하는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3. 기금의 출연 방법 : 기금을 현금으로만 출연하지 않고 현물로 출연하는 것에도 동의가 됩니다. 다만 현재 문화재단에 위탁한 문화시설을 출연할 경우 현재와 같은 운영,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으로 인천문화재단이 수익사업을 통해 스스로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할 뿐 더러, 인천문화재단이 문화예술의 공공성의 영역에서 시장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기초문화예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토론회 토론문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1. 기금의 지속적 조성 및 활용 방안

- 기금의 지속적 조성은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재단의 전문적·독립적 운영과 지역문화진흥사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인천시가 약속한 출연금을 통한 기금 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내 기업 등과 연계한 기부금 모집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2021년 3월말 기준으로 기본재산이 77,258백만 원이며,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이 120,008백만 원임. 서울문화재단의 조성 자원 구성을 보면, 시 출연금 외에 기부 및 후원금이 35.5%에 달함.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시 출연금을 제외한 기타 기부금(문화예술육성기금)이 3.9% 수준으로 2013년 이후에는 기타 기부금의 적립이 전무함
- 현재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의 용도)에 따르면, **운용기금**은 ①재단 운영비, ②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③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존 조례의 기금 용도 중 ‘재단 운영비’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광역재단인 인천문화재단의 기금은 사실상 지역문화진흥 사업 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볼 수 있음. 재단의 운영비는 기금 재원이 아닌 인천시 출연금으로 마련해야 함
  - 현재 조례상 기금이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되고, 적립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이는 초기 기금을 적립해나가야 하는 시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기금 조성을 53% 달성하고 기금 조성시한을 연장하여 기금 적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는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을 구분하여 사용을 제한하기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기금의 적립 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4조(기본재산)에서는 “재단은 기본재산 총액의 5%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기본재산의

처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 취득과 처분 시 보고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모든 경우에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 초과 시 보고)

## 2. 기금 조성시한 연장에 따른 기간 설정 여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43조(기금의 존속시한)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함
  - 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의 경우, 기금 조성기한(2020년)이 경과했으므로 조성기한 연장이 필요함. 인천시 재정 여건을 토대로 5 ~ 10년 범위 내에서 조성기한 연장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일반회계에서 기금 출연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총 17년의 기간 동안 6년간(2009, 2014 ~ 2016, 2019 ~ 2020)은 인천광역시의 기금 출연금이 전무했으며 3년 간(2011 ~ 2013년)은 기금 출연금이 1억 원에 불과했음. 기금 조성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해 계획대로 기금이 출연되어 목표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금 출연과 관련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3. 기금 자원 구성에 대한 현금 외 ‘현물출연’ 추가 여부

- 현물의 경우, 가치 평가가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현물의 보관 및 처분, 활용 상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 기금 자원은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금 모금과 활용 상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임
  -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기본재산의 자원 구성은 ①서울시의 출연금 및 재산, ②그 외의 기부금, ③사업 수익금, ④그 밖의 수입금으로 이루어지며,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도 기본재산은 ①국가·경기도 및 경기도 내 시·군의 출연금, ②그 외의 기부금, ③사업 수익금, ④그 밖의 수입금으로 구성됨
- 단, 기부문화의 활성화와 기금 조성 목표 달성을 위해 현물출연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현물을 기부금으로 수용할 것인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 기본재산 중 일부가 부동산으로 조성됨(서울문화재단 62,109백만원, 경기문화재단 16,896백만원). 부동산을 현물로 기부할 경우에도 재단의 부동산 기부재산 취득 후 관리·운영·처분을 염두에 두고 수용 여부 심의가 필요함

#### 4. 기금 사용 용도변경

- 조례상 기금(운용기금)의 사용 용도 중 재단 운영비를 제외하면,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과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4조의 대상사업은 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전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6.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 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8.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9.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10.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11.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 1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임
  - 위의 대상사업이 기존 문화재단의 사업영역을 전부 포괄하고 있으므로,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을 기금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시에도 기금 사용 용도를 위와 같이 한다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대상사업 중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은 기금 운용을 통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문화환경개선지역(문화취약지역) 지원, 재난 상황 시 예술인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단이 공익적 목적으로 긴급하고 유연하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부 대상사업 용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 방향 관련 토론편

이 병 래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 1. 인천문화재단 일반회계 현황

#### 1-1. 최근 5년간 세입 현황

구 분	국 비	인천시 지원			군·구 비	자체수입 (이월금 등)	기부금	합 계
		출연금	시비	소 계				
2016년	82.9억	12.5억	56.3억	68.9억	1.5억	49.1억	1.9억	204.1억
2017년	66.9억	62.2억	73.2억	136.4억	2.0억	17.9억	3.0억	225.3억
2018년	80.8억	61.3억	98.1억	159.4억	1.7억	34.1억	2.8억	278.7억
2019년	80.2억	59.6억	102.9억	162.5억	1.9억	46.0억	3.2억	293.8억
2020년	86.0억	79.3억	128.0억	207.3억	2.2억	65.5억	3.2억	364.1억
<b>합 계</b>	<b>396.8억</b>	<b>274.9억</b>	<b>458.5억</b>	<b>734.5억</b>	<b>9.3억</b>	<b>212.6억</b>	<b>14.1억</b>	<b>1,366억</b>

주) 세입은 평균 국비 29.4%, 시비 54.5%, 군·구비 0.7%, 자체수입 14.4%, 기부금 1%로 구성

#### 1-2. 최근 5년간 세출 현황

구 분	경상 운영비				사업비	기 타 (전출 이월 등)	합 계
	인건비	경 비	자산취득	시설공사			
2016년	15.2억	7.6억	0.04억		140.1억	41.3억	204.1억
2017년	19.1억	8.2억	0.4억		165.5억	32.1억	225.3억
2018년	23.3억	9.2억	0.3억		184.7억	61.2억	278.7억
2019년	25.0억	9.0억	0.3억		196.3억	63.1억	293.8억
2020년	23.9억	8.0억	0.5억	1.3억	253.7억	76.7억	364.1억
<b>합 계</b>	<b>106.5억</b>	<b>42억</b>	<b>1.54억</b>	<b>1.3억</b>	<b>940.3억</b>	<b>274.4억</b>	<b>1,366억</b>

주) 세출은 평균 경상운영비 12.1%, 사업비 71.8%, 기타 16.1%로 구성



## 2.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1,000억이 갖는 의미

2-1. 왜 1,000억을 기금 조성 목표로 하였는가?

기금 총액	운용 수익(5.5%)	경상비(20%)	사업비(75%)	기금 재적립(5%)
1,000억	55억	11억	41억 2,500만원	2억 7,500만원

주) 이현식(2001). 인천문화재단 설립·운영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2-2. 만약 기금 1,000억이 조성되었다면?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제 적립 기금	515.5억	527.6억	534.9억	537.9억	538.9억
실제 운용 수익	12.3억	11.6억	11.6억	14.5억	10.2억
1천억 운용 수익	23.9억	21.9억	21.6억	26.9억	18.9억
문화재단 경상비	22.8억	27.7억	32.8억	34.4억	33.7억
문화재단 결산액	204.1억	225.3억	278.7억	293.8억	364.1억

2-3. 기금 1,000억이 조성되면 재단의 ‘재정 독립성’ 이 확보되는가?

※ 2004년 재단 설립이후 재단 세입의 약99%가 국비, 시비, 군·구비이며,  
나머지 약1%만이 기부금임.(자체수입 대부분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 3. 17개 광역 문화재단 기금 현황

구 분	기금 목표액	기금 적립액	적립기금 사용여부	기금 명시	설립년도
서울	기본재산 중 현금	151.5억	조례○ (의회 보고)	조례○, 시한×	2004년
부산	500억	374.8억	정관○ (시장 허가)	조례×	2009년
인천	1,000억	538.9억	조례×	조례○, 시한○ 2020	2004년
대구	500억	218.2억	조례×	조례×	2009년
광주	500억	105.2억	조례×	조례×	2011년
대전	500억	148.8억	조례×	조례○, 시한×	2009년
울산	미설정	28.0억	조례×	조례×	2016년
세종	150억	150.0억	조례×	조례×	2016년
경기	기본재산 중 현금	1,031.1억	조례○ (의회 보고)	조례×	1997년
강원	500억	217.5억	조례×	조례○, 시한×	1999년
충북	300억	295.3억	정관○ (도지사 승인)	조례×	2011년
충남	300억	69.3억	조례×	조례×	2013년
전북	350억	306.1억	정관×	조례×	2016년
전남	200억	147.8억	정관○ (도지사 승인)	조례○, 시한×	2009년
경북	300억	34.4억	정관○ (이사회 의결)	조례×	1998년
경남	1,000억	146.1억	정관○ (도지사 승인)	조례○, 시한○ 2025	2010년
제주	300억	170.2억	조례○ (의회 보고)	조례○, 시한○ 2020	2001년

#### 4. 문화재단 설립이후 인천시의 지원 현황

구 분	인천시 지원			
	기금 출연	일반회계 출연	사업비 보조	합 계
2004년	395.7억			395.7억
2005년	10.0억	13.0억	2.8억	25.8억
2006년	30.0억	16.0억	2.9억	48.9억
2007년	10.0억	21.0억	7.6억	38.6억
2008년	20.0억	33.0억	33.1억	86.1억
2009년		37.0억	51.5억	88.5억
2010년	20.0억	42.0억	73.4억	135.4억
2011년	1.0억	54.5억	45.3억	100.8억
2012년	1.0억	27.0억	31.6억	59.6억
2013년	1.0억	19.3억	48.5억	68.8억
2014년		14.9억	51.5억	66.4억
2015년		7.2억	66.3억	73.5억
2016년		12.5억	56.3억	68.8억
2017년	12.0억	62.2억	73.2억	147.4억
2018년	5.0억	61.3억	98.1억	164.4억
2019년		59.6억	102.9억	162.5억
2020년		79.3억	128.0억	207.3억
합 계	505.7억	559.8억	872.8억	1,938.3억

주) 현 적립기금 538.9억 중 인천시 출연금 93.9%, 기부금 3.9%, 자체 적립 2.2%임.

#### 5.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 5-1. ‘기금 1,000억원 조성’ 을 ‘기본재산 1,000억원 조성’ 으로 변경

(현재) 적립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도록 명시

(개정) 기본재산 1,000억원을 조성하도록 변경

※ 인천시에서 재단의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어 기본 재산 1,000억 조성이 무의미, 그러나 기본재산 조성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님.

##### 5-2. 현금 출연과 더불어 현물 출연이 조성목표금액에 포함되도록 변경

(현재) 기금 조성목표 달성을 위해 현금만 출연(현금 출연)

(개정) 재산 출연이 조성목표에 포함되도록 변경(현금 및 재산 출연)

5-3. ‘2020년까지 조성’ → ‘2030년’ 으로 변경 또는 ‘연한 삭제’

(현재) 적립기금 1,000억원을 2020년까지 조성

(개정) 기본재산 1,000억원 조성연한을 2030년까지 변경 또는 연한 삭제

(2가지 안 중에서 검토)

※ 인천시에서 재단의 경상운영비와 사업비 대부분을 지원 받고 있어 기본 재산 1,000억 조성이 무의미하므로 조성 연한도 의미 없음

5-4. 기본재산의 사용 및 처분이 가능하도록 변경

(현재) 기본재산 처분 조항 미비, 기금 적립금액 사용 불가

(개정) 기본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 가능하도록 변경(단, 시의회에 사전보고 의무)

※ 현 적립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시민 대상 공청회 필요

← 저금리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운용에서 탈피

5-5. 운용기금의 용도 표현 삭제

(현재) 기금을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

(개정) 육성기금으로 통일

※ 서울·경기문화재단처럼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보통재산은 출연금 및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하여 운영 재원으로 사용

## 경제적 측면에서 본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운영방안

김 하 운 (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경제특보)

### 1. 기금운영의 배경

-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의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창달
- 기금 수익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재단 운영 소요자금 충당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계 지원 의지

### 2. 기금운영 결과

- 최선을 다한 수익달성에도 불구하고 운영수익률 지속 하락
- 기금조정 시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목표 미달, 재단 기여도 미미
- 관련 기관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 3. 기금 운영 환경

- 저금리 환경으로 투자수익률 저조, 향후에도 수익률 상승 기대곤란
- 기금 설립( '04.6) 후 지방기금법 제정 시행( '06.1)
  - o 예산대체 가능 기금이나 실적미미 기금의 폐지 및 예산사업 전환 법제화

### 4. 대안검토

- 기금 조성 기간 연장 또는 폐지 : 지방기금법 취지\*와 상충
  - \* 안정적 지속 지원, 특정자금의 신축적 운용, 탄력적 사업집행 필요시 기금 설치
- 현물출연 : 리스크 증대 및 경상수익 보장 불확실
- 기금사용 제한 해제 : 재정출연 조성기금의 성격에 불부합
- 재단 사업범위 확대 : 재단 성격과의 상충 및 역량 제약
- 시 통합기금에 전입 : 기금의 자금유통기능을 감안한 시 및 의회 방침 필요
- 기본재산으로 흡수 : 재단의 장기적 자금 부담 및 시·의회 협조 필요

## 5. 고려사항

-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한 시의 문화예술분야 재정지원 의지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예술 콘텐츠 공급 및 산업간 융·복합 지원
- 문화예술상품, 수요·공급시장, 참가자 및 기관, 지배구조 / 법 등 하부구조 지지

---

## 관련 자료

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인천문화재단 정관
  3.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 관리규정
-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06. 14. 조례 제3756호  
개정 2007. 11. 05. 조례 제4080호  
개정 2011. 02. 21. 조례 제4903호  
개정 2014. 05. 26. 조례 제5376호  
개정 2015. 12. 28. 조례 제5599호  
개정 2016. 12. 30. 조례 제5749호  
개정 2019. 01. 07. 조례 제605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 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2. 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02. 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6.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8.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9.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신설 2016. 12. 30. 시행 2017. 03. 01.>
10.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신설 2016. 12. 30. 시행 2017. 03. 01.>
11.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19. 01. 07.>
1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6. 12. 30. 시행 2017. 03. 01.> <제11호에서 이동, 개정 2019. 01. 07.>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05. 26.>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01. 07.>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05. 26.>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05. 26.>

1. 기금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현물
3. 그 밖의 현물

**제8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 02. 21.> <개정 2019. 01. 07.>
2. 기부금
3. 재단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4. 05. 26.>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개정 2011. 02. 21.>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수입금 <개정 2014. 05. 26.>
3. 기부금 <개정 2014. 05. 26.>



4.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4. 05. 26.>

**제10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단 운영비
2.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9. 01. 07.>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개정 2016. 12. 30.> <개정 2019. 01. 07.>

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01. 07.>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02. 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02. 21.>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9. 01. 07.>

**제16조(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 01. 07.>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 01. 07.>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2. 21.>

**제19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군·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30.> <개정 2019. 01. 07.>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05.>

**제21조(공연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 시 우선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02. 21.>

**제2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9. 01. 0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 기금이 설치 승인 시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 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부 칙<2016. 12. 30. 조례 제5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인천문화재단 정관

제정 2004. 11. 26. 정관 제1호  
개정 2005. 03. 05. 정관 제2호  
개정 2007. 04. 18. 정관 제3호  
개정 2008. 04. 23. 정관 제4호  
개정 2009. 04. 08. 정관 제5호  
개정 2010. 05. 18. 정관 제6호  
개정 2011. 02. 25. 정관 제7호  
개정 2012. 12. 20. 정관 제8호  
개정 2014. 01. 29. 정관 제9호  
개정 2014. 10. 08. 정관 제10호  
개정 2016. 04. 07. 정관 제11호  
개정 2017. 02. 28. 정관 제12호  
개정 2017. 04. 21. 정관 제13호  
개정 2018. 04. 18. 정관 제14호  
개정 2018. 12. 11. 정관 제15호  
개정 2019. 04. 05. 정관 제16호  
개정 2020. 05. 20. 정관 제1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 (이하 “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에 둔다.

**제3조(목적)** 재단은 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문화소외계층 등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및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천을 국제적 수준의 문화 도시로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0.> <개정 2014. 01. 29.>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보존 및 활용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 증진에 관한 업무 <개정 2020. 05. 20.>
5.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 전개
6.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7.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8.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9. 고려사 중심 강화지역 역사연구 <신설 2017. 02. 28.> <시행 2017. 03. 01.>
  10. 강화지역 문화유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지원 <신설 2017. 02. 28.> <시행 2017. 03. 01.>
  11. 소외계층 등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 증진사업 <신설 2014. 01. 29.> <개정 2017. 02. 28.>
  12. 인천아트플랫폼 등 문화시설 운영사업 <신설 2009. 04. 08.> <개정 2011. 02. 25.>  
<개정 2014. 01. 29.> <개정 2017. 02. 28.> <개정 2020. 05. 20.>
  13. 남북 문화·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20. 05. 20.>
  14.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4. 01. 29.> <개정 2017. 02. 28.> <13호에서 이동 2020. 05. 20.>
-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08.> <제5조에서 이동 2020. 05. 20.>

**제5조(운영원칙)**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신설 2020. 05. 20.>

② 재단 임직원은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충실한 전문성을 갖추고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0. 05. 20.>

##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대표이사 1인.
3. 이사 15인 이내(이사장 및 대표이사 포함). <개정 2016. 04. 07.>
4. 감사 2인.

**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02. 25.>

**제8조(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02. 25.> <개정 2012. 12. 20.>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통할하며,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이사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③ 대표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1. 02. 25.>

**제9조(이사)** ① 이사는 대표이사 및 당연직 이사,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에는 근로자 이사 1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2. 12. 20.> <신설 2020. 05. 20.>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삭제 2012. 12. 20.>

2. 시 문화예술 담당국장.

3. <삭제 2020. 05. 20.>

4. 시 교육청 문화예술 담당 국장. <개정 2007. 04. 18.>

③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7. 04. 18.>  
<개정 2011. 02. 25.>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7. 04. 18.>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1인과, 시의 문화예술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 재산상황의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개진

③ 감사에 관한 운영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20.>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대표이사는 3년으로,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7. 04. 18.>

② 당연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③ 선임된 임원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④ 보선된 대표이사의 임기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선임된 것으로 한다. ⑤ 근로자 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신설 2020. 05. 20.>

**제12조(임원의 징계 및 해임)**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직위해제, 징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04. 18.>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20.>
- ③ 이사회에서 임원의 징계를 심의할 경우 당해 임원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는 있다. <신설 2018. 04. 18.>

## 제3장 이사회

**제13조(구성)**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02. 25.>
-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11. 02. 25.>

**제14조(회의)**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1. 02. 25.>

- ② 정기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소집한다.
1.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대표이사는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에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5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35조에 의거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2. 12. 20.>

- ②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서면결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결사항은 소집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 추천 <신설 2012. 12. 20.>
  - 나. 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신설 2012. 12. 20.>
  - 다. 선임직 감사의 선출 <신설 2012. 12. 20.>
  - 라. 임원의 해임 <신설 2012. 12. 20.>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대표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7조 이사회 기능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0.>

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20.>

**제18조(의결 생략·배척사유)** 이사회의 의결 생략·배척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 제5호에 관한 의결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12. 20.>
2. 금전 및 재산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관계되는 사항. <개정 2012. 12. 20.>

**제19조(회의록)** 재단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 2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름과 도장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장 위원회 설치·운영

**제20조(설치)** 재단의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재단 내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20.>

- ② 위원회 등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2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01. 29.>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1. 29.>

1. 설립 당시 시에서 출연한 재산 <신설 2014. 01. 29.>
2. 설립 후 정부·지방자치단체·법인·개인 등이 출연한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신설 2014. 01. 29.>
3.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신설 2014. 01. 29.>
4.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재단 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신설 2014. 01. 29.>
5.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신설 2014. 01. 29.>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01. 29.>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신설 2014. 01. 29.>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신설 2014. 01. 29.>
3. 기부금 <신설 2014. 01. 29.>
4. 기타 수입금 등 <신설 2014. 01. 29.>

④ 재단의 기본재산은[별지]과 같다. <개정 2012. 12. 20.>

⑤ 재단은 기본재산의 목록을 작성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예금의 경우에는 잔액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28조에 의한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1. 29.>

**제23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01. 29.>

② 재단의 사업 및 일반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 <개정 2014. 01. 29.>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01. 29.>

1. 재단 운영비 <신설 2014. 01. 29.>
  2.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신설 2014. 01. 29.>
  3.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신설 2014. 01. 29.>
- ④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01. 29.>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는 경우 <신설 2014. 01. 29.>
2.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 01. 29.>
3. 기본재산에 대한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 01. 29.>
4. 기타 기본재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신설 2014. 01. 29.>

⑤ 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4. 01. 29.>

**제23조의 2(기부금품의 모집)** ① 재단은 제3조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한 사업 및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을 결산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전체 조항 신설 2008. 04. 23.>

③ 기부금품 모집·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01. 29.>

**제24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 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 01. 29.>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4. 01. 29.>

③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4. 01. 29.>

1.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신설 2014. 01. 29.>

2. 기부금 <신설 2014. 01. 29.>

3. 사업 수익금 <신설 2014. 01. 29.>

4. 기타 수입금 등 <신설 2014. 01. 29.>

④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4. 01. 29.>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신설 2014. 01. 29.>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신설 2014. 01. 29.>

3. 기부금 <신설 2014. 01. 29.>

4. 기타 수입금 등 <신설 2014. 01. 29.>

⑤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기금의 운용방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01. 29.>

⑥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01. 29.>

**제24조의2(기금운용심의회)** ① 대표이사는 기금관리·운용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재단 이사회와 별도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 01. 29.>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신설 2014. 01. 29.>

2.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신설 2014. 01. 29.>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신설 2014. 01. 29.>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신설 2014. 01. 29.>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대표이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4. 01. 29.>

② 기금운용심의회는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4. 01. 29.>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작성)** 대표이사는 차년도 사업계획·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0.>

**제26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군·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군·구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 02. 28.>

**제27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대표이사는 매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4. 18.> <개정 2011. 02. 25.> <개정 2014. 01. 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 연도의 잉여금은 다음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년도의 운영비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단, 목적사업의 잉여금은 차년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01. 29.>

**제29조(임원의 보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출석수당과 여비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의 실시)** 감사는 회계 등 재단 운영 사항에 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6장 사무 부서 및 직원

**제31조(사무 부서)**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 부서를 둔다.

**제32조(직원의 임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되, 재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33조(사무 부서의 조직 등)** ① 사무 부서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보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사무부서의 정원,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02. 25.>

**제34조(공무원 파견 요구 등)**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된다.

**제3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시행한다. 단, 시장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 12. 20.>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 12. 20.>

**제2조(경과조치)** ① 재단의 최초 선임직 이사는 제9조 제3항 및 부칙1조에도 불구하고 발기인대에서 구성된 10인 이내의 이사추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선임한다.

② 재단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제8조제2항 및 부칙 1조에도 불구하고 인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에서 이사장이 집행하며, 이 경우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시 회계절차 등을 준용하여 시 공무원 또는 재단직원(설립준비 요원 등)이 수행한다. 단,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는 재단 규정에 의거 대표이사가 집행하며 대표이사 취임 이전에 기 계약된 사항에 대한 지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최초 사무직원의 채용은 제32조 및 부칙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 부 칙 <2017. 0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고,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 관리규정

제정 2014. 01. 29. 규정 제95호  
개정 2014. 08. 28. 규정 제102호  
개정 2015. 04. 10. 규정 제112호  
개정 2016. 03. 17. 규정 제119호  
개정 2016. 12. 28. 규정 제125호  
개정 2019. 12. 30. 규정 제15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 8조에 의한 인천문화재단 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적립기금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적립되는 기금을 말한다.
-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 이외의 수입으로써,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충당하기 위해 1년 이내의 단기적으로 보유하는 자금을 말한다.
- ③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도록 정한 기관

**제5조(기금의 구분)** ① 기금은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 이외의 국가·시 및 군·구의 출연금과 보조금
2.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
3. 기부금
4. 기타 수입금 등

## 제2장 기금운용심의회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대표이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안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이사, 재단 선임직 임원 1인,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③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금융상품관리·투자자문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2. 채권·파생상품·주식·외환 등 전문가 경력 5년 이상인 자
3.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회계법인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5. 경제·경영·회계학 분야 학위를 가지고,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6.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제·금융·기금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신설 2016. 12. 28.>

④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⑤ 제2항에 의거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3항에 의거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위촉에서 배제하며, 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에라도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면 해촉한다.

1.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2.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람

3.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

4. 심의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패행위가 적발된 사람

⑦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정한 양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 간사는 기금관리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회의 진행 등의 회무를 처리한다.

⑨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재단 선임직 임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28.>

③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심의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 04. 10.>

③ 간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소집대상 위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04. 10.>

④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녹음하고,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위



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참석은 반드시 위원 본인이 하며 대리참석을 금한다. <신설 2019. 12. 30.>

**제11조(심의회 가결방법)**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심의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가결할 수 있으나 2회 연속은 제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가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찬반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04. 10.>

**제12조(자료제출 및 설명)** ① 심의회의 위원은 기금관리부서에 대하여 연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전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조치)** ① 대표이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위원을 출석시켜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부의안건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부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기금관리부서장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재상정)**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을 유보하고 심의자료를 보완하게 하여 심의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다.

- 제16조(비밀의 엄수 등)**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 위반으로 재단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위원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③ 위원은 기금관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경비지원 등)** ①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방법과 금액 등에 대하여는 재단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장 기금운용

- 제18조(기금운용의 원칙)** ① 재단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재단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③ 재단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의거하여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19조(개별 기금의 운용)**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평가금액이 보전되는 범위 내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 ②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며,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금융투자상품의 매입
  3. 기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운용방법으로 적정하다고 심의·가결한 내용
- ③ 운용기금은 자금의 수요가 있을 때에 즉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환금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 ④ 기금은 내부 전문인력을 통한 내부운용(직접투자)과 전문운용사 및 기획재정부 주관의 연금 투자펀드를 통한 외부운용(위탁투자)을 통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08. 28.>

-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대표이사는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달 계획
2. 사업별 기금 사용 계획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

**제21조(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 대표이사는 제20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기금운용심의회 의 심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5. 04. 10.>

② 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은 심의회의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며, 대표이사는 재단의 국내외 투자 및 자금 운용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관리상황의 보고)**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정관 제27조에 의거한 결산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금고의 지정

**제23조(금고의 지정)** <삭제 2016. 03. 17.>

**제24조(금고 지정방법)** <삭제 2016. 03. 17.>

**제25조(심의·평가 기준)** <삭제 2016. 03. 17.>

**제26조(금고약정 체결)** <삭제 2016. 03. 17.>

**제27조(금고약정의 해지)** <삭제 2016. 03. 17.>

제28조(금고운용의 보고) <삭제 2016. 03. 17.>

제29조(장부의 비치) 대표이사는 기금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재단 정관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문화재단 재무회계 규정을 준용한다.